

1. 개정이유

법 개정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부당 수수료 수취 금지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운행정보의 범위 및 제출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자료 제출 방법 구체화(안 시행규칙 제93조의19 신설)

- 1) 부당 수수료 부과 여부 점검을 위한 가맹사업자의 자료제출범위를 호출영업 관련 정보, 가맹점 식별정보 등으로 규정함.
- 2) 수집한 가맹택시의 식별자료와 운행자료를 통해 해당 차량의 호출 또는 배회영업 여부와 수수료의 부과여부 및 금액 등을 확인하고,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제출하는 운행자료의 항목, 형식 및 전송방식 등 세부기준은 고시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3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3조의19(수수료 수취 금지에 따른 제출자료의 범위) ① 영 제20조의1

4 제2의2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운송가맹점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
2. 운송가맹점의 운행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
3. 운송가맹점 운행의 영업유형 구분

가. 호출영업

나. 그 밖의 영업유형

4. 해당 운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 여부 및 금액

② 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료의 항목·형식 및 전송방식 등 기술적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93조의19(수수료 수취 금지에 따른 제출자료의 범위) ① 영 제20조의14 제2호의2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운송가맹점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 2. 운송가맹점의 운행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3. 운송가맹점 운행의 영업유형 구분 가. 호출영업 나. 그 밖의 영업유형 4. 해당 운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 여부 및 금액 ② 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료의 항목·형식 및 전송방식 등 기술적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